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7-23 호

##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3호가목 각 세목 외의 부분 중 "금액의"를 "금액(다만, 2 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에 카드론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카드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으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)의 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)	제29조(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)
① 은행은 보유자산 등에 대하	①
여 제32조제1항의 "한국채택국	
제회계기준"에 따라 충당금을	
적립하고, 다음 각 호에서 정한	
바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각각	
산출된 금액(국제결제은행의 내	
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으로	
서 각 호에 따른 합계금액이 이	
에 상응하는 내부등급법상 예상	
손실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	
해당 호가 적용되는 보유자산	
등에 대하여 건전성분류별로 각	
각 산출된 예상손실금액)이 이	
에 상응하는 건전성분류별 충당	
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	
을 매 결산시(분기별 가결산을	
포함한다)마다 대손준비금으로	
적립한다.	<u>.</u>
1.・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	3
카드자산(신용카드, 직불카드	
또는 선불카드로 인해 발생하	
는 채권을 말한다)에 대하여는	
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	
합계금액	

가. 카드대출자산(현금서비 스, 카드론 등 신용카드회원 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 하여 발생한 채권 중 리볼빙 자산을 제외한 채권), 리볼빙 자산(신용카드회원이 신용 카드업자와 별도 약정에 따 라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 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)에 대하여 건 전성 분류에 따라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 <u>금액의</u> 합 계금액

1) ~ 5) (생 략)

나. (생 략)

4. · 5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7ト
<u>금액(다만, 2개 이</u>
<u>상의 신용카드업자에 카드론</u>
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카
드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
각 세목에서 정하는 금액에
로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
자산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
<u>니하는 금액)의</u>
1) ~ 5) (현행과 같음)
나. (현행과 같음)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## 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금융과/은행과			
연	락	처	(02) 2100-2991/2954